

의안번호	2126636
의 퇴 인	김진표의원
회 답 일	2024.04.26.
추 계 번호	24D023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헌법특별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17억 7,200만원, 2029년 18억 1,2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88억 4,700만원(연평균 17억 6,9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평균
헌법특별위원회 신설 (안 제45조의2)	1,772	1,726	1,754	1,783	1,812	8,847	1,769

주: 본 추계 결과는 타 상임위원회 인력현황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특별위원회 증원인력 및 사업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5조의2 신설(헌법특별위원회)	헌법개정 방향 논의,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5조의2 신설(헌법특별위원회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헌법특별위원회(이하 “특별위원회”라 함)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은 현 시점에서 업무량¹⁾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타 상임위원회 인력 현황을 참고하여 증원인력을 추정함²⁾
- 특별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회의 및 사무실 공간과 회의장 마련을 위한 공사비 및 비품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, 국회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고 기존 예산³⁾ 범위에서 충당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이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는 본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4~2028년까지 5년으로 함

1) 참고로, 연계법률안 「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」 제4조 각 호에 따른 특별위원회 직무는 1. 헌법개정
의 방향과 조문별 내용에 관한 논의, 2. 헌법개정기초안의 작성, 3. 헌법개정에 관한 청원 등 헌법개정
에 관한 안건의 심사, 4.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및 관련 안건의 심사, 5. 그 밖에 헌법개정 준비
및 헌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2) 참고로, 국회의원 수는 「공직선거법」 개정 사항으로, 본 추계에서는 국회의원 수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
가정하여 추계함

3) 국회 예산 중 ‘국회청사유지및관리(2033-300)사업’의 2024년 예산은 510억원(2023년의 경우 427억원)
이 편성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공사비 및 비품 등에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없는 것으로 가
정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본 추계에서는 특별위원회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에 대한 인건비등 및 사업비를 추계함
- (소요인력 추정)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30명으로, 현재 상임위원회 중 위원 정수가 30명인 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, 두 위원회 인력현황 등을 참고하여 특별위원회 소요인력을 산출함
 - 국토교통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1명, 전문위원 1명, 심의관 1명, 입법조사관 11명(행정실장 1명 포함), 입법조사관보 등 6급이하 인력 8명 등 총 22명임
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 1명, 전문위원 1명, 입법조사관 11명(행정실장 1명 포함), 입법조사관보 등 6급이하 인력 7명 등 총 20명임
 - 현재 17개 상임위원회 수석 및 전문 위원의 정원은 43명, 입법조사관(입법심의관 포함)은 156명으로, 수석 및 전문 위원 1명당 약 3.6명임

[표 2] 국토교통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원

(단위: 명)

구 분		국토교통위원회	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직위별 정원	수석전문위원	1	1
	전문위원(심의관 포함)	2	1
	행정실장	1	1
	입법조사관	10	10
	입법조사관보	1	1
	행정관	1	1
	행정지원인력	5	4
	행정지원보조	1	1
합 계		22	20

자료: 「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」(2023.9.18.)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석 및 전문 위원
인력현황을 참고하여, 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수석 및 전문 위원을 각 1명씩 배치하고, 17개 상임위원회 수석 및 전문 위원 1
명당 입법조사관 3.6명을 참고하여 특별위원회 수석 및 전문 위원당 입법조사관은
각 3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며,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
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행정지원 인력 1명을 추가적으로 배치
 - (전문위원 2명) 수석전문위원 1명, 전문위원 1명
 - (행정실 5명) 행정실장 1명, 행정관 1명, 행정지원인력 3명
 - (입법조사관등 8명) 수석 및 전문위원별 각 입법조사관 3명, 각 행정지원 인력 1명

[표 3] 특별위원회 소요인력(추정)

구 분	수석전문위원	전문위원	행정실
소요인력	입법조사관 3명 행정지원인력 1명	입법조사관 3명 행정지원인력 1명	행정실장 1명, 행정관 1명 행정지원인력 3명(헌법개정자문위원회 관리 인력 1명 및 행정보조요원 1명 포함)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소요인력 15명⁴⁾에 대한 직급배분은 수석 및 전문 위원 각 1명, 행정실장
4급 1명, 입법조사관 5급 5명, 입법조사관보 6급 1명⁵⁾, 행정관 및 헌법개
정자문위원회 관리 인력 6급 2명⁶⁾, 행정지원인력 8급 3명, 행정보조요원
(별정직 9급상당)⁷⁾ 1명으로 함

[표 4] 특별위원회 직급별 소요인력(추정)

구 분	수석 전문위원	2급 (전문위원)	4~8급(8명)					9급(별정직) (행정보조 요원)	합 계
			4급 (행정실장)	5급 (입법조사관)	6급 (입법조사관보)	6급 (행정관 등)	8급 (행정지원인력)		
소요인력(A)	1	1	1	5	1	2	3	1	1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4) 「국회사무처 직제 시행규칙」 제17조에 따르면 입법조사관은 부이사관·서기관·시설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는 입법조사관을 최하위 직급인 행정사무관으로, 입법조사관 중에 행정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은 서기관으로 가정함
- 5) 각 위원회에 입법조사관보를 두고 있으므로, 본 추계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입법조사관 1명을 입법조사관보 6급 1명으로 대체하여 배치함
- 6) 행정관 직급(헌법개정자문위원회 관리 인력)과 행정지원인력 직급은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 6급과 8급으로 함
- 7) 각 위원회 별로 행정보조요원(별정직 9급상당) 각 1명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함

□ (인건비등) 소요인력 15명에 대한 인건비 등은 공무원 보수, 기관부담금, 기본경비, 자산취득비임

- 공무원 보수는 2024년 국회 각목명세서를 참고⁸⁾하여,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4년 4월)한 공무원임금상승률을 반영하고, 기관부담금과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기관부담금 비율, 공무원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며, 기본경비는 국회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(8.2%)을 고려하여 산출하면 다음 표와 같음
- 공무원 보수는 기본연봉 및 봉급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⁹⁾을 적용하고, 수당(입법수당 등)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함
- 기관부담금(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)은 공무원 보수에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요율¹⁰⁾을 적용하여 산출함
- 자산취득비는 2025년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가정하여 증원인력 15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4년 4월)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¹¹⁾를 곱하여 산출함

[표 5] 소요인력에 대한 인건비등(추정): 2025~2029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보수	1,224	1,242	1,260	1,279	1,298	6,303
기관부담금	160	164	168	171	175	856
기본경비	98	99	101	102	104	504
자산취득비	74	0	0	0	0	74
합계	1,556	1,505	1,529	1,553	1,578	7,72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8) 2023년 국회 예산 각목명세서 기준으로 수석전문위원 및 4급은 기본연봉, 입법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연가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이며, 6~9급은 봉급, 입법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, 연가보상비, 성과상여금, 시간외 근무수당, 정근수당, 정근수당가산금, 명절수당을 포함한 금액임

9) 2022~2024년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1.9%를 적용

10) 공무원 신규 채용 관련 기관부담 요율(2024. 4.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
기관부담률	13.114%	13.210%	13.305%	13.399%	13.494%

11) 2024년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,806,000원임

- (사업비) 사업비는 17개 상임위원회 운영경비(2024년)를 평균한 2억 1,100만원¹²⁾으로 가정하고, 동 사업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(2024년 4월)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³⁾을 적용하여 추정하면 다음 표와 같음

[표 6] 특별위원회 사업비(추정)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사업비	216	221	225	230	235	1,12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7억 7,4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88억 4,7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7]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: 2024~2028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
인건비등	1,556	1,505	1,529	1,553	1,578	7,720
사업비	216	221	225	230	235	1,127
합계	1,772	1,726	1,754	1,783	1,812	8,84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타 상임위원회 인력현황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특별위원회 증원인력 및 사업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12)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경비는 11억 9,500만원으로 평균값에서 제외함

13) 2025년 2.2%, 2026년 2.2%, 2027년 이후부터는 2.1%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